



**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
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 공고**

2025. 08.

코리아경기도투자회사

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 공고

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도민과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RE100 추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,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「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」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,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25. 8. 29.

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

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사업
- 모집부문 : 민간부문 사업자
- 사업기간 : 인·허가 및 건설기간(1년) / 운영기간(20년)
- 사업지역 : 경기도 관내 태양광발전사업

구분	발전규모 (MW)	위치
합계	6	
①경기도 제1호 기후펀드 발전소	3	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605, 637, 614, 655 번지
②경기도 제2호 기후펀드 발전소	2	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177-8, 1198-6 번지
③경기도 제3호 기후펀드 발전소	1	미정

※ 본 공모는 경기도 제1호·제2호 기후펀드 발전소만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며, 선정된 사업자는 제3호 발전소까지 수행해야 한다. (제3호는 별도 공모하지 않음)

- 설비용량 : 약 6MW 내외(3개소 - 3MW / 2MW / 1MW)
- 사업추진방식 :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부문 사업자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사업 부지별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여 사업추진(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참여 지분 최소 50% 초과)

2 공모일정

일정	내 용
8.29. ~ 10.12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공고 - 회사 홈페이지
10.13. ~ 10.14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접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접수방법: 인편 제출(이메일 접수 불가) - 접수기간: 2025. 10. 13.(월) ~ 10. 14.(화) 오전 10시 ~ 오후 4시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 - 제출처: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신재생에너지TF 과장 김만수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, 스타트업캠퍼스 2동 7층 ☎ 031-5171-5366 - 제출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발표용 PPT 출력본 15부 (A4 좌철 제본, 스프링 제본 금지) · 사업제안서 출력본 15부 (A4 좌철 제본, 스프링 제본 금지) · 발표영 PPT 및 사업제안서, 관련 파일 수록 USB 1개 ※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, 접수 기간 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
10.15. ~ 10.16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사전검토 - 사업제안서 및 정량평가, 구비서류 검토
10.17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본 심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정위원회 구성(선정위원 8명 내외) - 사업제안 발표 30분 내외(사업자 별)
10.20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내부 승인절차(대표이사 승인)
10.21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민간부문 사업자 선정 및 통보

3 사업 신청 자격

가. 사업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,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모든 구성원이 각각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.

- ① 본 사업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
- ② 사업 신청 서류 제출일 기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상실된 자, 부도·파산 처리되지 아니한 자

나. 사업 신청자는 단일 법인 또는 복수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, 컨소시엄 구성원 수는 최대 4개사 이내로 제한한다.

다. 단일 법인 또는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하나의 사업 신청자로만 참여하여야 하며, 본 사업에 이중으로 사업 신청자가 될 수 없다.

라.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모든 구성 업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인으로 한다.

4 사업 선정시 협약 기준

가. 민간부문 사업자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시행함

나. 민간부문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경기도 출자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다. 사업방식

- ① 사업비의 최소 15% 이상은 자기자본으로 납입하여야 함

※ 사업비 = 자기자본(15%이상) + 타인자본(85%이하)

- ②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자기자본의 최소 50% 초과하여 출자

- 민간부문 사업자 최소 참여기준

1. SPC 지분 참여율 : 30%이상

2. 주민수익 환원 기준 : SPC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2.5% 이상(5년)

3. 기후펀드 기준 : 총사업비의 5% 이상 운용(5년)
4. 금융 : 사업 전반의 금융조달주선 등이 가능한 민간부문 사업자
- ③ 선정된 사업의 각종 협약서는 상호 협의하여 체결
- ④ 사업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주주간 협약을 통해 추가적으로 주민수익 환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.

5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 평가 지침

가. 평가기준표

평가항목		평가요소	배점
정량평가 (담당부서)	재무 건전성 및 역량 (100점)	· 신용평가	20
		· 자기자본비율(Equity Ratio)	20
		· 신재생에너지 사업 금융조달 실적	30
		·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보유 현황	30
정성평가 (평가위원)	출자자 역량 및 신뢰성 (100점)	· 출자자 구성의 우수성	30
		· 출자자의 재무건전성	30
		· 출자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수행실적	40
		사업계획 타당성 및 실행력 (100점)	· 사업수행 방법 및 계획
· 사업분석 및 이익의 적정성	30		
·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 방안	30		
	재무운영 계획 및 공공성 (100점)	· 자원조달 계획	20
		·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	20
		· 주민수익 환원 계획	30
		· 기후펀드 운영 계획	30
합계			400
비고		평가 산정 시, 선정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은 평균 산출에서 제외함.	

※ 유의사항

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위반하여 특정 컨소시엄 또는 특정 회사가 식별될 수 있는 문구·사진·로고 등을 노출할 경우, 평가 시 감점 대상이 될 수 있다.

나. 본 심사

- ① 선정위원회(선정위원 8명 내외) 구성하여 평가
- ② 심사 절차
 - 선정기준 : 합산 평균 점수 30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
 - ※ 선정위원별 최고점 및 최저점은 제외

《 심사 일정 및 방법 》

- 일 시: 2025. 10. 17. 예정(심사일정 및 장소 별도공지)
- 발표내용: 제출된 PPT 내용(별도서식 없이 PPT 작성 발표)
- 발표자: 사업제안을 설명할 수 있는 자
- 발표순서: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

③ 심사기준

-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: 총 400점
- 우선협상대상자는 정량평가(100점), 정성평가(300점) 점수를 합산한 후 30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한 사업 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. 최종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 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되, 제1순위 사업 신청자가 협상을 포기할 경우 제2순위 신청자와 협의할 수 있다.

6 기타사항

가. 청렴이행 서약서

본 공모에 선정된 민간부문 사업자는 우리 회사에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나. 사업제안의 무효

- ① 본 공모지침서 '제3장 1.1 사업 신청자의 자격' 에 따라 사업신청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사업신청을 한 경우
- ② 본 공모지침서 '제3장 2.1 신청 일반사항' 에서 요구하는 사업 신청서류

준비가 미비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

③ 사업제안서 선정과정에서 선정위원 사전 접촉, 사전 설명 금지 위반 등 평가관련 비리가 확인된 경우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안은 무효로 한다.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

- 본 공모지침서 ‘제3장 사업 신청 자격 및 방법 1. 사업 신청 자격’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 신청자의 사업제안

- 제출 기한까지 소정의 장소에 사업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제안

- 사업제안서의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

- 동일한 사업 신청자가 2개 이상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경우

- 그 밖에 공모 관련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
다. 기타

① 비용부담 : 사업 신청자는 사업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등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,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.

② 저작권

- 제출된 사업제안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 작성권 등을 포함한 모든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며,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본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.

- 응모된 사업제안서는 회사의 계획에 따라 책자로 인쇄·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.

-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.

- 사업 신청자는 제출 서류가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만일 권리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

모든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다.

- ③ 공모지침서 해석 : 사업신청자격이나 신청조건,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등 본 공모지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관련법에 따른다. 또한 본 공모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,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, 지방출자·출연기관 관리 지침 등 국내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라. 제출서류

-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(컨소시엄의 경우 출자자별 제출)
-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(컨소시엄의 경우 출자자별 제출)
-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(컨소시엄의 경우 출자자별 제출)
- ④ 신용등급확인서 1부(컨소시엄의 경우 출자자별 제출)
- ⑤ 본 공모지침서 <서식1>부터 <서식25>까지의 서류 각 1부
- ⑥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

붙임) 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 지침서(제출서류 포함) 1부. 끝.